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3 발의연월일: 2021. 6. 30.

발 의 자:윤준병・이용빈・위성곤

김수흥 · 김병기 · 강득구

이수진(비) · 김성주 · 김영배

허 영・양정숙・전재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 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49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지켜야"를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
른 조치) ①・② (생 략)	른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3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을 <u>지켜야</u> 한다. 다만, 근로자만	<u>지켜야 하며, 제35</u> 조에 따른
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
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u>역하</u>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	2
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u>자</u>	<u>자 또는 석면관리 종</u>
	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
	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
	<u>한 자</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